시설대여규정 4-5-4

규정번호 4-5-4
제정일자 1997.6.18
최근개정 2009.2.26
개정차수 2차 개정
관리부서 구매시설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교직원과 학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타인(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우리대학에서 대여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구내식당 및 매점
2. 기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3조(운영자의 자격) 제2조의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상이 건전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
2. 시설물 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제4조(대여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자가 될 수 없다.

1. 우리대학 교직원 및 그 가족
2.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과 법인 사무처 직원 및 그 가족
3. 우리대학 재학생 및 그 가족
4.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시설물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계약체결) 시설을 대여할 때는 우리대학과 운영자간에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대여기간
2. 대여목적(운영자가 할 사업의 종류)
3. 사용료(공과금 포함)
4. 운영자가 우리대학에 예치 할 보증금
5. 운영자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 우리대학의 시설운영 방침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서약서

제6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됨과 동시에 자기비용으로 우리대학을 수익자(보험금 수령인)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우리대학의 허가없이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항상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학교시설물·비품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계약 당시의 대여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4. 고장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비품·기타 물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5. 운영자는 시설물 내에서 침식을 하지 못한다.
6. 운영자 및 그 종사원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7.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운영자가 자기비용으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운영자는 우리대학의 담당직원의 수시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수·관리방법·변경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9. 운영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우리대학의 승인없이는 휴업할 수 없다.
10. 운영자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수령할 제반 요금은 사전에 우리대학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11. 시설물 사용에 대한 공과금은 우리대학의 요청에 따라 매월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시설대여계약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시행한다.

제9조(해약조치) 우리대학은 운영자가 사용기간 만료전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우리대학의 방침변경으로 사유가 생겼을 때
3. 기타 운영자의 시설이용이 학교방침에 위배되거나 시설이용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49> <생략>

<50> 시설대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1> - <102> <생략>